

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1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. .
제안자 : 안산시장

개정사유

- 재난방지기구인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제와 환경보호과 해양오염방지제 신설및 법규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, 정비코자함

주요골자

- 재난관리기구 설치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를 구체화 및 보완하고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 방지 관련 업무를 추가 삽입
- 법규개정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시민과의 "행정서사 허가. 지도 감독"업무의 내용을 변경하고 청소과의 "오물.쓰레기" 및 "일반 폐기물"의 개념을 "폐기물"과 "재활용"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비

참고사항

○ 관련법규 (근거)

- 경기도자치 12200-1688 ('95. 5. 16)호 및 경기도 자치 12200-1689 ('96. 5. 16)호 공문 - 기구인력 보강 승인
- 행정사법 및 폐기물관리법

○ 소요예산 : 해당없음

○ 조례안 : 별첨

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총무국) 제8항 제5호중 “행정서사의 허가 및 지도감독”을 “행정사합동사무소인가 및 대한행정사회시지회 지도감독”으로 하고 제9항 제11호중 “재난 및 방제에 관한 사항”을 “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상황보고체계 구축”으로 하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각종시설물, 건축물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지도

제5조(보건사회국)중 제4항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

5.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
6. 해양오염원 정화 및 오염사고 수습대책 추진

제5항중 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폐기물에 관한 업무
3. 재활용에 관한 업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	안
<p>제4조 (총무국) ①~⑦ (생략)</p> <p>⑧ 1~4 (생략)</p> <p>5. 행정서사의 허가및 지도감독 -----</p> <p>6~10 (생략)</p> <p>⑨ 1~10 (생략)</p> <p>11. 재난및 방재에 관한 사항 -----</p> <p>(신설) -----</p>	<p>제4조 (총무국) ①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1~4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행정사합동사무소인가 및 대한행정사회 시지회 지도감독 -----</p> <p>6~10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1~10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재난관리종합계획수립 추진 및 상황 보고체계 구축 -----</p> <p>12. 각종시설물. 건축물안전관리및 안전관 리지도 -----</p>	<p>제5조 (보건사회국) ①~③ (생략)</p> <p>④ 1~4 (생략) (신설) ----- (신설) -----</p> <p>⑤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오물, 쓰레기에 관한 업무 -----</p> <p>3. 일반 폐기물에 관한 업무 -----</p>	<p>제5조 (보건사회국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1~4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해양오염방지종합대책 추진</p> <p>6. 해양오염원정화및 오염사고 수습대책 추진 -----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폐기물에 관한 업무 -----</p> <p>3. 재활용에 관한 업무 -----</p>		